

주 관 국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 입 기 관
건설국 (치수과)	마.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(한강을 제외한 국가 하천 포함)	· 하천법 제28조	구청장

별표 주관국란중 “주택국(주택재개발과)”를 “주택국(재개발과)”로 하고, 주택국(재개발과)란 다음에 주택국(건축지도과)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주 관 국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 입 기 관
주택국 (건축지도과)	1.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.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  나.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다. 검사  라. 과태료 부과·징수(다만, 승강기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	· 승강기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 · 동법 제18조제2항 · 동법 제21조제1항제4호 · 동법 제28조	구청장

부 칙  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94
------	----

2002. 12.  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11월 22일, 한봉수의원 외 11인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11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서울특별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(2002년 12월 27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한봉수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 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시내공원에 소재한 애국지사 기념관, 전시관 등이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주차장 등 인접한 관련 시설을 함께 위탁함으로써 관리·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.
- 나. 주요골자
  - 애국지사 기념관, 전시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7조제1항제3호의 “애국지사 기념관을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”를 “애국지사의 기념관과 그 관련 시설을 기부채납한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”로 개정하고 “(수입이 적어 운영이 적자인 시설에 한한다)”를 삭제하도록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용훈)

- 본 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시 공원내 애국지사기념관, 전시관 등 공익성이 강한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전기·수도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이에 인접한 주차장 등 관련시설도 그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
- 그 내용을 검토한바,
  - 안중근의사 기념관, 윤봉길의사 기념관, 서대문독립공원의 독립관 등 독립운동관련 기념관과 전시관의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하고 그 시설에 인접한 주차장 등 관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관련단체의 운영난을 덜어줌으로써 시설물을 더욱 잘 관리하고, 나아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며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
  - 현행 조례에서 이미 이들 시설의 운영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입이 적어 운영이 적자인 시설에 한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01. 9. 29 의원발의로 개정한 바 있으며
  - 이번 개정에서 제7조제1항제3호중 “수입이 적어 운영이 적자인 시설에 한한다”라는 내용까지 삭제하는 것은 기념관들이 흑자운영인 상태에서도 공공요금을 지원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됨으로 재검토가 요망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생략
- 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기념관과 그 관련시설을 기부채납한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99
------	----

2002. 12.  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12월 12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12월 12일
- 다. 상정일자 : 서울특별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02년 12월 27일 상정, 의결)